**학생회칙 유권해석안**

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정우진 서하림 유희철 김민건 성환규

1. **제3조제2항**
   1. 재학생의 경우 가을학기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   2. 8회 이상 납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된 학생의 경우, 정회원으로 간주한다.
2. **제105조제4항**
   1. 학부·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·학과 정회원에게만 있으며, 자치규칙에 따른 추가적인 선거권 부여는 인정하지 않는다.

**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**

1. **제5조제1항제5호**
2.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의 경우, 권한대행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.
3. **제23조제2항**
   1. 선거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이 동일인이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두 직책을 서로 겸직 가능하다고 해석한다.
4. **제30조제3항**
   1. 사본 제작 등을 포함한 모든 유출을 금지한다.
   2. 제31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위해 전자문서의 사본(인쇄본)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   3.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문서의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.
5. **제36조제1항**
   1. 온라인으로 선거가 진행되므로 각 호의 구비서류 중 서면제출을 요하는 호에 대해 전자문서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해석한다.
6. **제37조제1항, 제3항**
   1. 온라인으로 선거가 진행되므로 각 호의 구비서류 중 서면제출을 요하는 호에 대해 전자문서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해석한다.
7. **제37조제6항**
   1. 추천인서명을 받지 않거나 추천인서명인 수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.
8. **제49조제2항**
   1. 총학생회 선거의 각 선거운동본부(후략)
   2.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각 선거운동본부(후략)으로 변경하여 해석한다.
9. **제75조제1항, 제2항**
   1. 여기서 말하는 투표는 모두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를 의미함으로 해석한다.